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의결서

주 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에 의하여 경찰청장(조지호)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조 지 호

직 위 : 경찰청장

탄핵소추사유

I. 탄핵소추사유의 요지

피소추자는 치안총감으로 2024. 8. 10. 대통령에 의해 경찰청장으

로 임명되어 재직하고 있다.

피소추자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다.

첫째, 피소추자는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으며, 위헌적인 계엄 해제가 요구되는 긴급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을 침해한 것이다.

둘째, 피소추자는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헌법상 국회 출입 차단이나 국회의원의 활동 제약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력으로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출입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민주적으로 의사를 형성할 권리를 봉쇄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

셋째, 피소추자는 경찰청장으로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차단, 국회의

긴급 집회를 무산시키려 하였다. 이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피소추자는 내란죄(형법 제87조, 제91조)를 범하였다.

넷째, 피소추자는 경찰의 최고책임자인 경찰청장으로서 각급 경찰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남용하여 경찰력으로 국회를 폐쇄하고 비상계엄 하에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대의민주주의를 침해하였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설에 난입한 계엄군의 내란행위에 가담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를 범하였다.

다섯째, 피소추자는 2024. 11. 9.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위법적으로 경찰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집회 참가자들의 합류를 방해하고, 무장 경찰과 참가자 간의 충돌을 유도해 비상계엄 조건을 만들려는 의도를 보였다. 피소추자는 경찰력을 동원해 집회 참가자를 과잉 진압하여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불법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였다.

II.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관련 헌법 및 법률 조항

국회는 다음과 같은 헌법 및 법률 규정에 따라 피소추자에 대해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
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
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직위와 탄핵
소추의 사유·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
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33조(탄핵소추의 의결)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은 소추
대상자의 성명·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
(이하 “소추의결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찰청장) ⑤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
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
할 수 있다.

Ⅲ. 경찰청장의 법적 지위와 임무 및 책임

경찰청장은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경찰청 조직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제12조)고 규정하여 경찰의 조직과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다(제14조 제1항). 특히,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제14조 제3항)고 규정하여 경찰청장이 경찰사무의 총괄적 책임자이자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고 경찰조직을 지휘·감독하는 최고 책임자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경찰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담당하는 등 경찰의 임무를 수행할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제3조). 또한 경찰법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제5조)는 규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남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경찰청장은 경찰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청장 자신도 권한남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IV.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배

가. 내란행위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22:30경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만든 여소야대 상황에서 탄핵소추안 발의, 주요 예산 삭감 등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견제권 행사를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파렴치한 중북 반국가 세력”인 국회를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구체화한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의 포고령(제1호)은 그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국회등의 일체

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된 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가운데 군이 국회 내부로 진입하였다. 헬기에 분승한 계엄군 특전사 무장병력과 장갑차가 국회로 출동하여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군병력은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보좌관들을 총기로 위협하였다. 또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였다. 국회를 보호해야 하는 서울청 소속 6기동단 소속의 국회 경비대는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국회를 봉쇄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수 많은 시민들과 대치하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은 자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가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에 찬성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비상 국회 의원총회를 국회

의사당 밖에서 소집하고, 그 장소를 수차례 바꾸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당사에 남아 있도록 종용하였다.

한편, 무장한 계엄군이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당직자의 핸드폰을 압수하였으며, 선거 시스템의 핵심인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였다. 피소추자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출입을 통제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정치인,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 등 법조인, 언론인, 시민사회 인사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교정국 소속의 동부구치소에 체포된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였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다음 날에는 지방에 주둔 중인 7공수여단과 13공수여단도 서울로 진입할 계획이었으나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이 계엄군과 대치하는 가운데 2024. 12. 4. 01:00경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국회의원들에 의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를 결의하였다. 결국 피소추자는 대통령 및 국무위원 등과 공모하여 형법상 내란죄를 범하였다.

나. 피소추자의 가담행위

(1) 경찰의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

윤석열 대통령이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22:35경 서울경찰청(김봉식 청장)은 국회의사당 주변에 5개 경찰기동대를 배치하고, 22:46경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하였다. 23:03경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담장을 넘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다수의 국회의원과 당직자들도 국회 출입을 통제당했고 월담을 하여 국회로 진입할 수밖에 없었다. 23:06경 서울경찰청은 국회 관계자에 한하여 신분을 확인한 후 출입을 허용하였으나,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공포된 밤 23:37부터 다시 국회 출입이 전면 차단되었으며, 경찰청(조지호 청장)은 23:57경 국회 출입 전면 통제를 지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소추자는 12. 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여 "박안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국회에 출입하는 모든 출입인원을 통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피소추자는 다음날 자정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소집하여 주요 간부 및 직원에게 즉시 출근을 통보하였으며, 0:46경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에 경계 강화 비상근무를 발령하였다 2024. 12. 4. 1:02 국회는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

로 가결하였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군의 철수를 요구했지만 계엄군은 계속하여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1:45경 국회 사무총장의 요구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국회 관계자를 출입하게 조치하였으며, 2:03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서 전원 철수하였다. 3:01경 서울경찰청은 5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부대 복귀를 지시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4:30경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하고, 5:40 계엄 해제를 공고하였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 및 선거연수원 진입

경찰과 계엄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 및 경기도 수원 의 선거연수원에도 진입하였다. 계엄군 10여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직후인 2024. 12. 3. 22:33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에 도착하여 투입되었고, 23:09~23:25경 경찰 4명이 도착해 정문에 배치되었다. 초기에 도착한 계엄군 10여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야간 당직실에 진입하여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행동을 감시하고 청사 출입을 통제하였다. 23:58경 경찰 90여명이 추가로 도착하여 청사 밖 버스에 대기하였다. 다음날인 12. 4. 0:30경 계엄군 증원병역 110여명이 추가로 청사 주변에 배

치되었다. 계엄군은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 가결한 1:02 이후인 1:50경 완전히 철수하였다. 경찰은 7:00경 완전히 철수하였다.

같은 시각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도 경찰과 계엄군이 투입되었다. 계엄군 130여명은 12. 4. 0:50경 선거연수원 청사 인근에 대기하다가 2:40경 철수하였다. 경찰도 12. 3. 23:25경 선거연수원 청사에 도착하였는데, 수원서부경찰서 서장 등 10여명의 경찰관이 온 이후, 총 43명이 투입되었고, 이어서 2기동대 60여명이 추가로 도착하여 모두 100여명이 배치되었고, 대부분 건물 밖에서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12. 4. 7:00경 철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소추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집행한다는 명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 기동대 포함 200여명의 경력을 투입·배치하고 안전조치 및 우발대비를 지시하였다고 알려졌다. 피소추자는 12. 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배치한 것과 관련하여, “선관위 주요 포스트에

대해 특별한 조치가 있을 거라 들었고 우발 사태 대비를 위해 경기남부청장한테 전화해 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고, 지시 당사자를 묻는 질문에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요청을 받았다”며 “방첩사 주관으로 합동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에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초기에 도착한 경찰 인력 중 일부는 소총으로 무장한 상태였으며 실탄을 쏜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 또한 부정선거 의혹을 들여다본다는 명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계엄 해제 후 철수하자, 경찰은 교통정리를 도우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침해

피소추자는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인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계엄령 해제요구를 위한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였다는 점에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을 침해하였다.

라. 헌법상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제1항),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헌법 제49조) 침해

피소추자는 비상계엄 상황이라 할지라도 헌법상 국회 출입 차단이나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한 제약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력으로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출입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의 민주적 의사형성을 원천적으로 가로막아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제1항),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헌법 제49조)을 침해하였다.

마. 내란죄(형법 제87조, 제91조)

피소추자가 경찰청장으로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경찰로 하여금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저지하여 국회의 긴급한 집회를 무산시키려 하였던 행위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를 강압에 의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행위에 가담한 행위에 해당하는

다는 점에서, 피소추자는 중요 임무 종사한 자로서 형법상 내란 죄를 범하였다(형법 제87조, 제91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들의 행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는, 피고인들이 이른바 12·12군사반란을 통하여 군의 지휘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함과 아울러 국가의 정보기관을 완전히 장악한 뒤, 1980. 5. 초순경부터 이른바 ‘시국수습방안’, ‘국기문란자 수사계획’, ‘권력형 부정축재자 수사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검토, 추진하기로 모의하고, 그 계획에 따라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예비검속,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국회의사당 점거·폐쇄, 보안목표에 대한 계엄군 배치, 광주시위진압,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운영, 정치활동 규제 등 일련의 행위를 강압에 의하여 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행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결국 강압에 의하여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회의,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배제함으로써 그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하며, 위 일련의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그

경위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1980. 5. 17.을 전후한 이 사건 범행 당시에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목적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여 국회의사당의 점거·폐쇄와 같은 행위는 강압에 의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배제함으로써 그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1980. 5. 17. 당시 시행되고 있던 계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므로(제11조, 제12조, 제13조),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측면이 있고, ... 다른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받는 강압의 정도가 증대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조치의 그와 같은 강압적 효과가 법령과 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이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여 전역에 걸친 비상계엄 그 자체는 법령과 제도의 결과라 할지라도 그 위협적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폭동의 내용인 협박행위에 해당하여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2024. 12. 3. 대한민국 전역에 발령된 비상계엄과 그에 따라 경찰력과 같은 강압에 의하여 국회의사당을 폐쇄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여 그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대한민국 전역에 발령된 비상계엄의 위협적 효과가 국헌문란 목적으로 이용된 경우이므로 폭동에 해당하여, 내란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피소추자는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

· 감독할 권한을 갖는 경찰의 최고 책임자이다. 피소추자는 각급 경찰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경찰력으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비상계엄 하에서도 침해할 수 없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헌법상 대의민주주의를 침해하였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설에 진입하여 무단으로 증거수집활동을 한 계엄군의 내란행위에 가담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를 범하였다.

사. 폭동 유도 행위, 집회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침해

피소추자는 2024. 11. 9.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한 인원수보다 많다는 이유로 경찰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며 노동자들의 집회 합류를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무장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간에 몸싸움이 발생했으며, 이는 계획적인 과잉진압과 대응으로 폭력을 유도하여 비상계엄 조건을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11월부터 계엄문건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소추자 또한 12. 3.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규모 집회 현장에서 계획적인 과잉대응으로 폭동을 유도

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또한 피소추자는 경찰력을 통해 11명의 노동자를 연행하고 국회의원 신분을 밝힌 한창민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1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함으로써 불법적으로 공권력을 지휘하였다.

V. 헌법 및 법률 위배의 중대성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그 직무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더욱이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수사해야 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피소추자가 일반적 지휘권을 가지며, 예외적으로 구체적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가담하

고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한 피소추자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탄핵해야 마땅하다.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1. SBS, 2024. 12. 3.자 <[전문] 계엄사 포고령 1호 “일체 정치활동금지”> 제하 기사
2. 한겨레, 2024. 12. 4.자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폐쇄…국회에 계엄군 진입 시작> 제하 기사
3. 한겨레, 2024. 12. 4.자 <국회 의결로 계엄 해제…‘국회 봉쇄’ ‘의원 출입 금지’는 내란죄> 제하 기사
4. MBC, 2024. 12. 4.자 <국회의원 출입 막은 경찰…누구 지시로 움직였나> 제하 기사
5. 한국일보, 2024. 12. 4.자 <의원들 국회 출입 막은 경찰에 ‘내란죄 공범’ 적용 가능한가> 제하 기사
6. SBS, 2024. 12. 5.자 <경찰청장, 국회의원 출입통제에 “내란이라 생각하지 않아”> 제하 기사
7. 머니투데이, 2024. 12. 4.자 <드리나는 계엄 당일 행적…경찰은 국회 막고, 군은 선관위도 진입> 제하 기사
8. 한국일보, 2024. 12. 5.자 <계엄사령관 요청받고 국회 출입통제 지시한 경찰청장…“사실상 내란 동조”> 제하 기사
9. 연합뉴스, 2024. 12. 6.자 <경기남부경찰, 계엄 당시 선관위 시설 2곳에 200명 투입> 제하 기사

10. 뉴시스, 2024. 12. 5.자 <방첩사령관과 통화 후 선관위 경찰
배치> 제하 기사